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94
----------	-------

발의연월일 : 2026. 8. 14.

발 의 자 : 송옥주 · 윤준병 · 전종덕
이정문 · 임미애 · 주철현
이상식 · 황명선 · 이재관
강준현 · 안태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인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적 검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하역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위험물의 하역) ① (생략) <u><신 설></u>	제34조(위험물의 하역) ① (현행과 같음) <u>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하역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u>
<u>②</u> ~ <u>④</u> (생략)	<u>③</u> ~ <u>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